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참 고</b>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2019.4.6.(토)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은행과장 전 요 섭(02-2100-2950)	<b>담 당 자</b>	최 치 연 서기관 (02-2100-2951)	

**제 목 :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양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 제정되었습니다.**  
**- 정부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대주주 승인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.**  
**[조선일보 4.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]**

## 1. 기사내용

- ① “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승인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두고 금융혁신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벽에 막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”
- ② “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은행 대주주 자격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를 피해갈 기업은 많지 않을 것”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'19.1.17일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(「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)에 따르면
  -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(한도초과보유주주)가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)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,

-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은 국회에서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명시되었으며,
  - 은행, 보험, 금융투자업자,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)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양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대주주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이며,
  -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변인</b> p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